

**별첨 6****자가격리 통지서****자가격리 통지서**

성명		생년월일	
자가격리	자가격리 기간		
	자가격리 장소	[ ] 자택 등 거주지 [ ] 그 외 시설	
		주소	

귀하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제2조에 따라  
자가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.

※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 
제8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2015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**성북구청장**

(관인생략)